

#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제3623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2025. 5. 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김포시에서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,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환경에 적응하고 산업현장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여, 기업과 외국인근로자가 상생하는 경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근로자의 정의(안 제2조)  
나. 외국인 고용 환경 실태조사(안 제5조)  
다.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(안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 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반영(비용추계서 별첨)  
다. 그 밖의 사항
- 입법예고  
가) 예고기간 : 2025. 3. 12. ~ 4. 1. (20일)  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 - 부서협의  
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  
나) 성별영향분석 : 원안 동의  
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  
라) 지방보조금관리 : 원안 가결
  - 중앙 및 도 관련부서 : 해당 없음

##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외국인근로자”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김포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실태조사)**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사업)**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
2.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역량 강화 교육
3. 외국인근로자의 일터 내 안전 강화 사업
4. 외국인근로자의 법률·노무·취업·행정 등 상담 및 통·번역 지원
5.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편의 제공사업
6.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 지원사업
7.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·기업·

사업장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·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·수강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)**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(“이하 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8조(협력체계)**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·과·소    |                | 일자리정책과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실·과·소장<br>성 명  | 일자리정책과장<br>이 창 우       |
|             | 팀 장<br>직위·성명   | 외국인고용지원팀장<br>김 정 하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<br>성명·전화 | 지방행정주사<br>김 정 하(☎5805) |

**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“외국인노동자”란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도지사의 책무)**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 정착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외국인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**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
2. 외국인노동자 고용 분야별 추진 과제
3. 외국인노동자 건강증진 및 노동환경 안전성 확보 방안
4. 외국인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6조(실태조사)**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, 노동환경, 외국인노동자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 간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사업)**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
2. 외국인노동자 일터 내 안전 강화 사업
3.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 지원사업
4.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
5. 외국인노동자 자조 모임 지원사업
6. 외국인노동자 법률·노동·고용 상담

7.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·군이나 법인·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)**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·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**제9조(협력체계 구축)**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정부, 시·군,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외국인근로자”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평택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)**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평택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사업)**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
2.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·노동·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
3. 외국인근로자 권익신장 및 후생복지 등을 위한 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6조(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)**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「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7조(협력체계)**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비 용 추 계 서

**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**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 제6조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시 예산 소요

다.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(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)

- 해당없음

**2. 비용추계**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2025년도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성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예정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         | 2025년  | 2026년   | 2027년   | 2028년   | 2029년   | 계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 | 75,000 | 125,000 | 150,000 | 200,000 | 200,000 | 750,000 |

※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.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- 예산법무과장 협의필

**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**

- 해당없음

**4. 작성자 :**   경제국   일자리정책과 과장 이창우   팀장 김정하

##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| 1차연도   | 2차연도    | 3차연도    | 4차연도    | 5차연도    | 계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세 입                     | 75,000 | 125,000 | 150,000 | 200,000 | 200,000 | 750,000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   | 75,000 | 125,000 | 150,000 | 200,000 | 200,000 | 750,000 |
| 세 출                     | 75,000 | 125,000 | 150,000 | 200,000 | 200,000 | 750,000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   | 75,000 | 125,000 | 150,000 | 200,000 | 200,000 | 750,000 |
| 재원 조달                   | 75,000 | 125,000 | 150,000 | 200,000 | 200,000 | 750,000 |
| 의존<br>재원                | 소 계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교부세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자체<br>수입                | 소 계    | 75,000  | 125,000 | 150,000 | 200,000 | 200,00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수입  | 75,000  | 125,000 | 150,000 | 200,000 | 200,00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외수입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지방채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기 금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그 밖의 사항<br>(채무부담, 민자 등)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